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198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5 월 30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인구동향조사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통계청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101003호 [1962.6.1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5.22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결과표	○ (추가)	○ 5구간 연령별 주간 사망자 수 비교	○ 코로나19 관련하여 초과 사망 분석수요 증가에 따른 자료제공 범위 확대
	○ (추가)	○ 시도별 주간 사망자 수 비교(요약)	
	○ (추가)	○ 성별 연령별 주간별 사망자 수 비교	